

의안번호	제 214 호
의 결 년 월 일	1997. 12. 23. (제 69 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7. 12.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7. 12. .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1. 제 안 이 유 :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
도록 하기위함

2. 주 요 골 자 :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 : 2년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5항

4. 사전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첨부 : 1.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기타 참고자료(근거법령, 지침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신설 >	<u>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u>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항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723호

제

표

1997. 10. 4. (제13723호)

3. 제1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수정신고납부절차 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군에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의신청 등) ①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부한다.

③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41호의6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징요구는 별지 제41호의7서식에 의하여 배달증명우편으로 한다.

⑤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별지 제41호의8서식에 의한다.

제39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다른 1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신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부부의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내부부의 차관보가,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신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재무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내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